

<의안번호 제2008 - 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02. 0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02. 12.

2. 개정이유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2007. 11. 13.)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변경 및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군수의 여비 지급 구분 변경(안 제4조제1항)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 ⇒ 별표 1제1호라목 적용
 - 나.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용 조문 앞에 “영”을 첨가함(안 제5조)
- 다. 인용하는 상위 규정의 조 및 별표를 변경(안 제5조제1호, 제6조)
 - (1)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 제28조 및 제29조

⇒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제28조 삭제)

(2) 별표 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 ⇒ 영 별표 1

라.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정부구매카드를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적용하는 조항 신설(안 제5조제7호)

○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본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8조의2 및 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2007. 11. 1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공무원여비 규정]

-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2호

제8조의2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은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07.11.13]

제16조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숙박비와 식비를 말하며,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식비는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의 추가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다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3>

③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06.3.29, 2007.11.13>

④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⑤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⑥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